

미디어에 나타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

An Analysis of Social Discourse on the Enactment of School Sport Promotion Law Produced in the Media

박재우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부

Jae-Woo Park(kpjw1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사례로 본 법안이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의 제정 전반의 과정 속에 어떠한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어 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었는가를 과정적 맥락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봄으로써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관련된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담론의 분석은 학교체육, 더 나아가 한국 체육 전반의 구조적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내재적 현실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론적인 입장에서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맥락의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의 지형은 첫째, 학교체육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 담론, 둘째, 본회의 부결 이후 대두된 '성토' 담론, 셋째, 또 다른 '시각'으로서 엘리트체육의 위축을 염려하는 '반대' 담론 그리고 넷째, 본회의 통과 이후 학교체육 도약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희망' 담론으로 구성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사회적 담론 | 미디어 |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체육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a social discourse on the enactment of School Sport Promotion Law produced in the media. For this purpose, 73 articles related to the law collected from portal sites such as 'Daum', 'Naver' and 'Yahoo' as well as 'KINDS'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a social discourse's feature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s a social 'support' discourse calling for the enactment of the law, a 'denunciation' discourse after the rejection at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 'opposition' discourse concerned about the regression of elite sport and a 'wish' discourse expecting the leap and vitalization of school sport. From the holistic point of view, a dominant discourse is the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of the enactment of the law. However, smaller but stronger voices of dissent concerning about the decline in the development of elite sport (especially elite sporting success) were raised.

■ keyword : | Social Discourse | Media | School Sport Promotion Law | School Sport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12월 30일 체육계에서 그토록 희망하던 ‘학교체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50년 만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이다”[33]. 본 법안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되었으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최초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인 ‘학교체육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은 2010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언론이나 학계에서 ‘학교체육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이 중복·혼용되어 사용되어 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법안 명칭인 ‘학교체육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특히 두 법안의 명칭이 확실히 구별되게 칭해지거나 사용되어지는 부분에서는 개개의 법안 명칭을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밝힌다.

이 법 제정에 관한 배경과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학교체육진흥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에 이른 것은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체육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황수연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이 대전일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한 의문 “체육에 관한 기본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존재하는데 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이 필요했던 것일까?”[33]은 본 법의 제정에 관한 사회적 정황을 다시금 생각해 볼 여지 내지는 당위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단순한 결과론적인 차원을 넘어 본 법안이 제정되어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교체육진흥법이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동안 정치계, 체육학계, 체육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의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와 목소리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와 목소리에는 더 이상 학교체육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내부의 반성[5]에서 기인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열망이 함축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지지하는 논의와 목소리가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한 가운데 본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 내지는 목소리도 제기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체육수업 시수의 감소, 7차 교육과정부터 체육교과의 선택과목으로 변경, 그리고 학교제도권 내에서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 침해와 같은 학교체육 전반의 문제점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러한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진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정황 속에서 2006년 3월 한국체육학회가 개최한 ‘학교체육진흥법 시안 공청회’를 필두로 수차례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이 이루어져 왔고, 그 속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지지하는 사회적 결집을 통해 여론은 탄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러한 지배적인 여론의 목소리 외에도 작지만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체육진흥법안이 국회통과에 이른, 즉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만병통치약과 같은 ‘희망적 대안’이라는 결과적인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어떠한 담론의 지형을 형성해 왔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작게는 체육계 내에 변화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크게는 우리 사회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체육진흥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움직임과 사회적 여론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 사회 내지는 체육계가 어떠한 가치와 방향을 지향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담론이란 “사회적 실천으로 인식되는 언어 사용”이며,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특정한 세계관하에서 경험을 의미화 하는 방식”을 지칭([33]에서 재인용; [39])하는 바처럼,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담론들을 이해하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학교체육을 중시적인 관점에서는 한

국 체육시스템의 문제를, 나아가 거시적인 과정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치 지향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교체육(진흥)법 관련 담론 분석을 함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매체가 형성한 사회문화적 담론,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여론형성에 중심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매체의 담론은 국민개개인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조우(遭遇)”한다는 남상우[7]의 주장처럼,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관련한 신문보도를 포함하여 미디어 매체가 생산한 담론들의 분석은 학교체육(진흥)법 관련 담론의 지형을 파악하는데 그 핵심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학교체육법 내지는 학교체육진흥법 관련 연구는 본 법안 제정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19], 입법상의 문제 탐구와 제정시안의 분석[27], 그리고 스포츠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학교체육법의 제정 논리[6]에 초점을 맞춘 일부 제한적인 측면에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사례로 본 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된 시점부터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제정 전반의 과정 속에 어떠한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담론의 지형을 이해하는데 학교체육과 관련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체육(진흥)법 관련 담론의 분석은 학교체육 전반의 구조적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내재적 현실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된 시점부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시점까지의 과정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담론의 지형이 형성되었는가?

둘째, 과정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담론은 학교체육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상황과 어떠한 맥락을 형성하는가?

2. 학교체육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이해

본 연구의 핵심 대상인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해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주요 법안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학교체육진흥법안 주요 내용

제정 이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 시책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나.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며,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안 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에 반영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16조)
아.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출처: 법제처, [시행 2013.01.27] [법률 제11222호, 2012.01.26, 제정] - <http://www.law.go.kr/법령/학교체육진흥법>

II. 사회적 담론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1. 사회적 담론의 개념적 준거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 “담론이 말하고자 하는 ‘무엇’은 시대적 함의를 포함한 공동 인식이 집합적 결론일 수도 있고 행위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

다”[26]. 이에 많은 학자들은 어떠한 사회의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관해 생산되거나 재현된 담론을 통해 그 사안이나 이슈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였고, 나아가 담론 이면에 감추어져 존재하는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경주해 왔다. 실제로 많은 “담론분석가들은 텍스트나 대화의 표면을 구성하는 단어, 구, 절, 혹은 몇몇 언어요소에 집중”[7]하여 연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일종의 ‘침묵’ 내지는 언어의 이면에 감추어진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해 왔다[37].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담론 분석에 주목한 것은, 담론이 개인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질서의 구현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 인식과 실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와 사안에 관련하여 생산된 담론은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 내고 주체의 행위의 의도를 파악[26]하는데 유용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담론은 Fairclough[35][36]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사회관계들 그리고 지식과 믿음의 체계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이다[15]. 이는 사회가 생산해 낸 담론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path)를 제공해 주며, 나아가 그러한 담론들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담론 분석을 통해 사회를 통찰력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담론을 구성하는 사회 변화의 흐름, 정황 그리고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박해광[25]이 “담론은 항상 사회적 실천과의 관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실천이기 때문에 텍스트 내부에만 주목하려는 경향은 결국 권력이자 이데올로기로서의 담론의 본성을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담론 분석에 있어 ‘정황’(context)을 강조”(p.106)하고 있는 부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담론이 생산되고 재현되는 과정과 관련된 사회적 정황(situation)과 맥락(context)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Huckin[38]의 논리와도 그 뜻을 같이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학교체육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

적 맥락을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담론을 분석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받는다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을 함에 있어 본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논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접근해야 함이다. 이러한 이론적 준거의 함의는 남상우[7]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 보도에서 생산된 담론 분석을 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유치과정 보도에서 나타난 조각적 침묵을 비판적으로 설명한 이론적 논점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박재우[13]가 미디어 나타난 돔구장 건설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을 함에 있어 한국사회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 돔구장 건설 관련 사회문화적 맥락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여 분석한 논리도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신문과 뉴스보도 자료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재생산되었는가를 사회적·정치적 맥락의 파악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담론분석을 위한 틀과 분석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에 나타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하여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검색사이트인 다음(Daum), 네이버(Naver), 야후(Yahoo)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검색사이트(KINDS)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시 말하면, 3개의 주요 포털검색사이트를 통해 주제어인 ‘학교체육법’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을 입력하여 검색되는 신문, 블로그, 카페, 발표자료, 관련 성명서 등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취합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사검색사이트(KINDS)을 통해 전국종합일간신문 보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핵심 내용이 학교체육(진흥)법을 벗어나는 자료들과 학교체육(진흥)법을 핵심 내용으로는 다루고 있으나 중복된 많은 자료들은 제외하여 실제적으로 73여 편에 달하는 자료를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의 초안, 시안, 법안 내용, 공청회 자료, 선행연구 등을 추가적으로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되어 분석 대상의 자료로 선정된 73여 편의 미디어 자료들은 수집과정부터 자료의 분류, 범주화 그리고 범주의 해석의 과정은 Tonkiss[40]의 담론분석 일반적 절차에 기초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 보도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4단계의 절차를 구성하여 실시한 남상우[7]의 비판적 담론분석의 구체적 과정의 도식 틀을 차용,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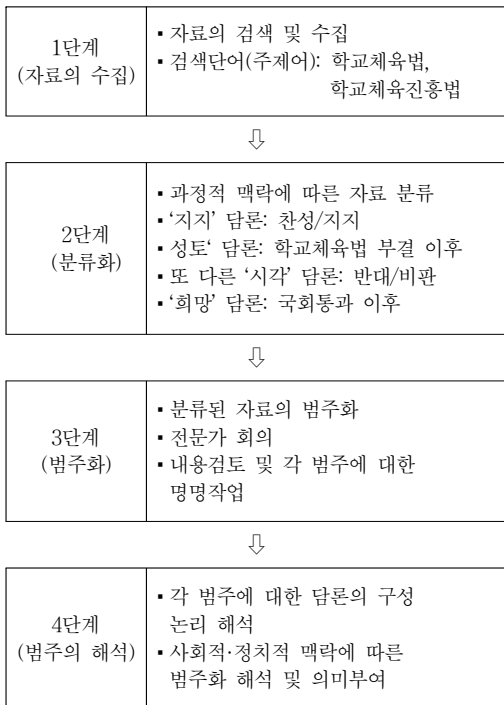


그림 1. 담론 분석 틀(남상우(2007)의 '비판적 담론분석의 4단계 과정' (p. 134)을 수정보완함[7]).

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의 검색과 수집하는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재정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어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결과정을 거쳐 학교체육진흥법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

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범주 안에서 내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교체육법 제정을 요구하고 찬성하는 '사회적 지지' 담론, 학교체육법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나타난 '성토' 담론, 본 법안이 부결에 이르게 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주변적 담론으로서의 '또 다른' 시각의 담론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통과에 이른 후의 '희망' 담론으로 구분하여 범주화(categorization)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세 번째 단계의 범주화 작업은 본 연구자가 구성한 범주들이 타당한가를 검증받기 위해 스포츠사회학 연구자 2명과(박사1명과 박사과정생 1명)의 전문가 회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범주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맥락 파악과 함께 해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III.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

미디어에 나타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은 본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의 정황부터 학교체육진흥법 국회 본 회의의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여 크게 4단계의 맥락적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지지' 담론: 학교체육 살리기

우리나라 체육의 영역을 구분하면 크게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의 3분야로 구분하는 것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과 함께 3대 체육영역의 하나로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체육활동을 일컫는다[16]. 그러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이 자라나는 유소년/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체육의 가치와 위치는 주변에 머물러야 했다. 나아가, 학교체육의 범주 안에서 엘리트체육으로 연결되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반인권적 대우와 같은 문제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몇몇 사건들(예를 들면, 2003년 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 KBS 시사기획 프로그램 ‘쌈’의 ‘슬픈금메달’ 편 및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편)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14][22].

그 결과, 2000년 대 중반부터 학교체육을 바꾸자는 목소리들이 점점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학교체육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의 제정이 요구되기에 이르게 된다. 한 예로, 2008년 11월 10일 부터 조선일보에서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적 열망을 담아 ‘학교체육, 교실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9일에 걸쳐 연재를 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는 2008년 11월 21일 ‘학교체육 교실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의 정점에 학교체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해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래의 글은 학교체육의 실정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체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국민 건강의 기본인 체육이 붕괴되어 가고 체육시간은 점차 축소되고 입시위주의 교육 풍조에 밀려 체육의 가치는 점차 폄하되고 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대변되는 국가 수준의 공식적 정책기구와 정책방향 등 정책목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육수업은 단축되거나 선택으로 아예 폐지되고 기존의 수업마저 입시과목 보충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이라고는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이 대부분인 현재의 조건과 체육지도인력의 비전문성의 심화는 학생체력을 매년 퇴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육과목의 필수화, 스포츠강사배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운동부 지도자의 퇴출, 선수인권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조치들을 법적 사업화할 수 있는 학교체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16].

이와 같이, 성문정은 학교체육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학교체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글을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 특집판과 그의 개인블로그[17]를 통해 게재 하였다. 이에 앞서, KBS 뉴스 9(2008. 12. 5)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통해 학교체육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건강 증진, 지적체의 조화, 전인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체육은 입시 위주 교육 제도, 당국의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고사 직전입니다. 교육과학부에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늦었지만 학교체육 정상화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체육 활동의 활성화와 운동선수의 인격과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법률안이 제시됐습니다([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학교체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학계와 정치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체육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이 뉴스 보도를 통해 설과되기에 이른다. 이는 앞서 진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은 개인 홈페이지(<http://www.youngjean.or.kr>)의 포도에세이[2]를 통해 학교체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보도 자료를 사진과 함께 인용하면서 학교체육 살리기 법안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문제시 되어온 학교체육을 살리기 위한 체육학계와 정치계의 노력이 더해 허창혁[29]은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에 연재한 원고를 통해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특히 학교운동부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학교체육법이 담아야 할 요구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 있다:

학교체육활성화, 학생 체력증진 및 평가, 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의 화두였다.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줄어든 중학교 3학년의 체육수업시수, 고등학교 체육의 선택교과화,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체육의 내신평가 방식 전환 등 학교 안에서 체육교과의 위상이나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교육 전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은 체육계 누구나 염원했던 일이며, 그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30].

이와 같이, 정기간행물 그리고 뉴스와 신문 보도들을 통해 학교체육법 제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블로그, 개인홈페이지 등)에 다시 노출되면서 공고화된 학교체육의 문제를 타개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체육법 제정의 당위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미디어 매체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지지 담론의 핵심은 학교체육의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로 구체화된다. 더 이상 학교체육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은 학교체육 '살리기'란 명분으로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학교체육법 제정을 지지하는 담론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학교체육법 제정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들에서 부각된 것은 다른 아닌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4]였다. 그동안 훈련과 시험에만 몰두한 학생운동선수들은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일반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하에서 체육활동의 기회를 빼앗긴 채 공부하는 기계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체육법이 그리고 본 법안 제정의 당위성은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에 맞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학교체육법 부결 '성토' 담론: '여당'과 '야당'의 이름으로

2010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되었다. 여당인 민주당, 체육학계 그리고 체육시민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대한 희망(학교체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체육계 전반의 목소리는 학교체육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학교체육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이 열리길 바라였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다. 이에 언론 보도의 내용은 학교체육법 국회 본회의의 부결을 두고 여야의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묘사하게 된다. 뉴시스의 보도[10]에 따르면, "학교체육법 부결, 철저한 정치 보복...與 사과해야"라는 제목으로 "학교체육법이 정쟁의 대상인가...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한나라당이 이제는 아이들의 건강까지 빼앗은 셈"이라는

안민석 의원의 말을 인용보도 하였다. 또한, 경기신문 [1]은 "학교체육법 부결, 국회 테러"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제목으로 안민석 의원의 학교체육법 부결에 대한 입장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개인블로그를 통해 학교체육법 부결 사태에 이르게 한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난하는 글의 입장을 올리기도 하였다[18].

이러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학교체육법 부결 사태에 대해 체육단체와 학계의 입장을 2010년 3월 8일 체육시민연대는 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표명하게 되는데, "여당과 야당"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치적 논리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사항임을 강조하고 나서게 된다:

학교체육법은 '공부하지 않는 운동부 학생'과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이라는 한국 체육의 불행한 현실을 타개하고, 더 나은 제도와 환경 속에서 체육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의 열의를 모아 만든 것이다...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박영아 한나라당의원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으며...학교체육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찬성과 반대' 혹은 '여당과 야당'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27].

또한, 정희준교수는 '정희준의 어쩌킷'을 통해 학교체육법 국회 본회의의 부결에 대한 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2월 본 회의에 상정되었던 학교체육법이 부결되었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합숙 훈련을 금하고, 훈련도 방과 후와 주말에만 하게 되며, 일정 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선수는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게 요지다.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거쳤고 수차에 걸친 공청회까지 했는데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반대를 주도해 결국 부결됐다. 지역구가 송파구여서 그런가, 송파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한체육회 박용성회장은 이미 공개적으로 학교체육법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한국체육의 적들이다'[24].

특히, 정희준교수의 글은 일부 개인블로그에 의해 스크랩되어 학교체육법 부결에 사태를 이끈 한나라당과 일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법 부결 사태에 대해 가장 많이 보도되

거나 등장한 내용은 여당 즉,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성토’의 글이다. 이때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학교체육법 부결 ‘성토’ 담론의 핵심은 학교체육법 부결을 두고 ‘여야의 정치 대립의 장’, 특히 학교체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한나라당으로 집약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비판적인 보도 내용을 넘어 다시 학교체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학교체육법 부결...그래도 가야 할 길”[29]이라는 담론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김대진 스포츠교육학회 회장은 “학교체육은 당리당락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9월 정기국회 때는 꼭 통과해야 한다”[4]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한나라당에 의해 부결되었던 학교체육법은 여야 정치적 대립이나 정쟁을 넘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배적인 담론이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또 다른 ‘시각’ 담론: 학교체육법 제정 반대의 논리

학교체육법 제정을 둘러싸고 본 법안 제정을 찬성하는 지지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되어 왔고, 국회 부결 이후에도 찬성을 지지하는 지배적인 목소리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태를 비난하는 담론으로 변화되어 지속적인 학교체육법 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배적 담론과 달리, 학교체육법 부결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학교체육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시각’으로서의 반대 담론의 핵심은 ‘엘리트체육의 위축’으로 집약된다.

학교체육법 제정 반대 최 일선에서 있던 박영아 의원은 반대의 논리로 “절차상의 문제, 엘리트체육의 축소 위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미비 그리고 특정과목 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의 필요성이 의심”[7]된다는 4가지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박영아 의원은 국회의 학교체육법 반대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엘리트체육에 대한 염려를 피력하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보았지만, 엘리트체육은 우리나라 국위선양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트체육의 일부 문제점만을 과정·지적하여 합숙과 훈련을 친편일률적으로 제

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11].

그리고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중앙일보 시평을 통해 학교체육법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부결 이전에 일찍이 피력하기도 하였다:

세계 스포츠계가 엘리트체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대로 되면 국제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나라를 빛내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게 필자의 걱정이다[12].

이와 더불어, 황수연[31]은 “엘리트스포츠 위축시키는 학교체육법”이란 제목으로 학교체육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특히 엘리트체육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3일 ‘학교체육법’을 입법 예고했다...그러나 이 학교체육법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순이 되는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엘리트선수 육성 등 우수선수 배출하는 길 자체를 틀어 막아버렸다. 황당한 일이다...올림픽 성공의 텃밭은 학교체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엘리트스포츠가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는 고려치 않고 엘리트선수 육성이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학교체육법안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체육인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32].

이와 같이, 작지만 학교체육법 제정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 학교체육법 제정으로 인해 엘리트체육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었다. 그동안 엘리트체육의 성과 뒤에 감추어진 지도자의 폭력 등과 같은 선수들의 비인권적 대우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문제 등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교체육법 제정을 통해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개선될 것 희망했던 지배적 담론은 엘리트체육 위축에 따른 국제적인 성과를 걱정하는 또 다른 목소리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엘리트체육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금지, 훈련시간 제한,

최저학력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안민석 의원의 대표발의 학교체육법[18]은 제2의 김연아, 이용대와 같은 훌륭한 엘리트선수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 그동안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달성한 성과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리였다.

4. ‘희망’ 담론: 학교체육 도약의 전기 마련

여러 절차상의 이유와 엘리트체육의 위기를 불러올 것에 대한 염려를 제기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주도로 부결되었던 학교체육법은 박영아 의원에 의해 2011년 3월 14일 ‘학교체육진흥법안’과 같은 해 5월 11일 안민석 의원에 의해 다시 ‘학교체육법’안으로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게 된다. 이에 두 법안 사이에는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법안명’, ‘학교체육진흥정책 추진의 주체’,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및 ‘기준 미달 학생선수의 대회참가 제한’, ‘상시합숙 훈련근절과 선수기숙사 운영’, ‘스포츠강사의 명칭’, ‘학교체육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등이 관련 쟁점으로 부각되었다[3]. 이 두 법안 사이에 존재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을 표명하고 각각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2011년 5월 13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두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율, 학계 전문가 집단의 의견 개진 그리고 안민석 의원과 박영아 의원 간에 심도 있는 소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두 법안 사이에 존재하는 쟁점 부분도 대폭 완화되어 조정이 이루어졌다. 즉, 체육계 전체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유되면서 두 법안의 쟁점 부분도 조정되어, 결국 두 의원이 합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여러 힘든 과정을 통해 학교체육진흥법안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이른다. 학교체육진흥법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형성된 담론은 핵심은 학교체육에 대한 ‘희망적’ 담론으로서 학교체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20][34]. 그동안 학교체육의 활성화

와 발전의 지향점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와 ‘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이상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학교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학교체육의 변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두고 김영갑[5]은 체육인 체육성재단이 운영하는 블로그 ‘스포츠동지’를 통해 2002년 미국의 텔어스연구소가 발간한 미래예측보고서 제목을 인용하여 ‘스포츠문화의 위대한 전환’(great transi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만큼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의 의미는 학교체육 더 나아가 한국체육의 전반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근직 한림성심대 교수는 강원일보 기고칼럼[20]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와 선진국처럼 일인일기(一人一技)를 연마하는 건강한 학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실현되어 우리나라 학교체육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21].

그리고 몇몇 이유로 한때 학교체육법 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영아 의원도 학교체육진흥법 통과 직후 “학교체육에 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학교체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31]라고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또한, 정일규 한남대 교수는 대전일보[23]를 통해 학교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교체육진흥법은 아이들의 ‘숨구멍’ 역할을 할 것으로 학교체육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진흥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형성된 사회적 담론은 ‘희망’과 ‘기대’로 나타났다. 즉, 학교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그동안 정체되어온 학교체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한국체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희망’ 담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1. 관련 내용은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2011년 5월 13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집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p.66-75을 참조할 것.

IV. 결론 : 맺는말

본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까지 제정 전반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어 왔는가를 미디어 매체의 프리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지형을 파악함에 있어 본 연구는 학교체육의 문제를 둘러싼 전반의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맥락의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의 지형은 학교체육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 담론이 형성되었다. 안민석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학교체육법안에서부터 박영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학교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에 나타난 학교체육(진흥)법 관련 사회적 담론의 지형은 지배담론으로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었다. 학교체육 관련 법안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언론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그동안 체육수업 시수의 감소 내지는 선택화, 일반학생들의 체력저하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교체육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이 탄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체육 관련 법안 제정을 지지하는 여론은 체육계와 정치계를 중심으로 개최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조성된 논의들이 다양한 미디어매체(블로그, 카페, 개인홈페이지 등)에 노출되고 확산되면서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담론의 지형은 학교체육법안이 본회의 부결 이후 대두된 '성토' 담론이었으며, 세 번째 담론의 지형은 또 다른 '시각'으로서 엘리트체육의 위축을 염려하는 '반대' 담론 형성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의 지형이 형성된 배경에는 학교체육 관련 법안 제정을 찬성하는 목소리 이면에 작지만 강한 반대의 목소리로서 또한 제기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엘리트체

육의 붕괴를 가져올 잠재적 요인으로서 학교체육법 제정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 학교체육법 제정이라는 지배적인 찬성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박영아 의원을 주축으로)을 포함하여 일부 체육계 인사(대표적으로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들은 학교체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와 학습권 박탈과 같은 역기능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현행 엘리트체육 시스템의 근간인 학교운동부 육성 시스템을 개혁하는 법안을 찬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학교체육법 제정이 초래할 한국 엘리트체육의 위축, 즉 올림픽 10위권 유지라는 국가 엘리트체육의 목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침해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힘(power)있는 인사들이었기에 학교체육법 국회 본회의 부결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에 나타난 학교체육법 제정 관련하여 지배적인 여론으로서 '제정 요구와 지지' 그리고 '비판적 시각'으로서 '반대'라는 담론은 남상우[7]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보도와 관련하여 대두된 담론인 '유치찬성'이라는 지배담론과 '반대와 비판'이라는 주변담론으로 나누어 해석한 것과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학교체육법 국회 본회의 부결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학교체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과 태도로 전환하면서 2011년 3월 14일 학교체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점이다. 이로 인해, 같은 해 5월 11일 다시 안민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학교체육법안과의 쟁점 되는 부분들을 상호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학교체육(진흥)법안을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절충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학교체육법 제정 반대 담론을 등지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계의 대의(大義)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적 관점에서 학교체육진흥법안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네 번째로 형성된 담론의 지형은 학교체육 도약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희망' 담론으로 구성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동안 학교체육(진흥)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변질되기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본 법안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형성된 담론의 지형은 학교체육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 학교체육의 변혁을 기대케 하는 ‘희망’ 담론이 자리하게 되었다. 즉, 본 법안을 통해 그동안 지향해온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의 이상향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문제제기되어온 학교체육 전반의 구조와 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여 미디어에 어떠한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체육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학교체육에 대해 어떠한 가치와 방향을 지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체육(진흥)법 관련 사회적 담론의 지형의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학교체육의 가치와 방향성은 일반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의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우려가 된 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비만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침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가치지향을 추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침해와 같은 학교운동부 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를 인식함에 또 그 이면에 한국 엘리트체육의 성과와 위축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 있는 함의는 조희진[26]이 “미디어는 다양한 사회 담론을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역할과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논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기능한다”는 주장처럼,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배적인 담론인 지지담론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체육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도한 뉴스와 신문 보도의 내용은 다시 개인블로그, 개인홈페이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그 내용이 확산되고 재생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담론의 지형을 만들어내고 다시금 재현되고 확대하는데 신 미디어

어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적 이슈를 두고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확대되는 담론의 지형이 어떠한 ‘비판의 부재’로 인해 일방적으로 ‘솔립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남상우[7]의 주장처럼, 미디어 매체들이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균형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순기능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1] 경기신문, “학교체육법 부결, 국회 테러” 민주 안민석의원 “정치보복” 사과 촉구, 2010. 03. 04.
- [2] 권영진의원홈페이지, “12. 5 학교체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포토에세이 - <http://www.youngjean.or.kr>, 2009. 03. 16.
- [3] 김기홍,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pp.66-75, 2011(5).
- [4] 김대진, “[학교체육이 희망이다] 김대진회장 학교체육법 통과돼야”, 스포츠조선, 2011. 07. 27.
- [5] 김영갑, “스포츠문화의 위대한 전환: 학교체육법”. 스포츠동지. [전문체육] - <http://www.sportnest.kr/724>, 2010. 09. 17.
- [6] 김영갑, 남중웅, “스포츠문화의 위대한 전환: 학교체육법”, 움직임의 철학, 제18권, 제2호, pp.31-42, 2010.
- [7] 남상우, “평창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정보도의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5호, pp.131-147, 2007.
- [8] 남상우,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 미디어스 오피니언 기고 & 칼럼, 2010. 03. 15.
- [9] 네이버블로그 시세차익, “학교체육법 입장: 스포츠현장에서”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ulsum&logNo=120102967139>, 2010. 03. 03.
- [10] 뉴시스, 안민석 “학교체육법 부결, 철저한 정치

- 보복...與 사과해야”, 2010. 03. 03.
- [11] 박영아 의원, “학교체육법, 이래서 반대했습니다”. 개인홈페이지 - <http://www.parkyoungah.com/board/getFrontArticleView.do?boardType=2&postNo=3306>, 2010. 03. 02.
- [12] 박용성, “[중앙시평]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중앙일보, 2009. 08. 07.
- [13] 박재우, “돔구장, 약인가? 독인가?: 미디어에 나타난 돔구장 건설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 논문지, 제12권, 제7호, pp.378-393, 2012.
- [14] 박재우, 박현욱, “한국의 스포츠정책 변동 사례 연구: KBS 시사기획 ‘짬’의 보도와 학교운동부 인권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8권, 제2호, pp.17-34, 2010.
- [15] 박해광, “문화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제2권, pp.83-116, 2007.
- [16] 성문정,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법 제정”, 스포츠과학, 제9권, 제106호, pp.26-31, 2009.
- [17] 성문정, “학교체육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다음블로그 - <http://blog.daum.net/1streturn/2>, 2009. 05. 08.
- [18] 안민석 의원, “학교체육법 부결 사태에 대한 입장”, 다음블로그 - <http://blog.daum.net/osan21/7827494>, 2010. 03. 03.
- [19] 연기영,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과제”,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12호, pp.117-157, 2011.
- [20] 유근직, “[강원포럼] 학교체육 도약의 전기 마련됐다”, 강원일보, 2012. 02. 04.
- [21] 유근직, “[강원포럼] 학교체육 도약의 전기 마련됐다”, 유근직의 “스포츠 스토리” - <http://blog.daum.net/sportstory>, 2012. 02. 04.
- [22] 임태성, 박재우, “스포츠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0권, 제10호, pp.11-23, 2011.
- [23] 정일규, “[수요프리즘] 아이들의 숨구멍, 학교체육진흥법”, 대전일보, 2012. 02. 07.
- [24] 정희준, “그들은 왜 짐승이 되었나?”, 정희준의 ‘어퍼컷’, 2010. 03. 24.
- [25] 조선일보(2008. 11. 10-19). “학교체육, 교실로 돌아가자”, 9일에 걸친 연재.
- [26] 조희진, “미디어에 나타난 의류 재활용 관련 담론과 사회적 논의 방식”, 실천민속학연구. 제16권, pp.121-165, 2010.
- [27] 체육시민연대, “[학교체육법] 부결에 대한 체육단체 및 학계 입장”, 경원대학교 무예사랑 태권도부 총동문회 공식카페 - <http://cafe.daum.net/kwtk>, 2010. 03. 08.
- [28] 최정일, “학교체육법 제정상의 몇 가지 쟁점과 제정시안의 분석”,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3호,, pp.55-104, 2009.
- [29] 한겨레, “학교체육법 부결...그래도 가야할 길”, 18면, 2010. 03. 06.
- [30] 허창혁, “대한민국에서 운동부로 산다는 것: 학교체육법에 바란다”, 스포츠과학, 제9권, 제109호, pp.83-89, 2009.
- [31] 홍경환, “학교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2012. 01. 01.
- [32] 황수연, “[내 생각은] 엘리트스포츠 위축시키는 학교체육법”, 한교닷컴, 오피니언, 2009. 03. 01.
- [33] 황수연, “[수요프리즘] 아이들의 숨구멍, 학교체육진흥법”, 대전일보, 23면, 2012. 01. 15.
- [34] 황수연, “학교체육진흥법과 한국체육의 새 도약”, 대전일보 19면, 2012. 01. 16.
- [35] N. Faircl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marketization of public discourse: the universities,” *Discourse and Society*, Vol.4, No.2, pp.135-149, 1993.
- [36] N. Faircl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1995.
- [37] M.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1972.
- [38] T. Huckin, “Textual silence and the discourse of homeless,” *Discourse & Society*, Vol.13, No.3,

pp.347-372, 2002.

[39] Tischer, Stefan, Michael Meyer, Ruth Wodak and Eva Vetter, *Methods of Text and Discourse Analysis*, Sage Publications, 2000.

[40] F. Tonkiss, "Analysing text and speech: content and discourse analysis," in C Seale(2nd ed.) *Researching society and culture*(pp.367-381). London: Sage, 2003.

저 자 소 개

박재우(Jae-Woo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2001년 8월 :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과(체육학 석사)
- 2011년 6월 : Loughborough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

Leisure Policy (Ph.D), 영국

- 2011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강사
<관심분야> : 스포츠 사회문화 변동, 스포츠정책